

『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·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3월 28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29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4월 5일

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허 경 선

나. 제안이유

- 친환경적인 시설도입으로 주민신뢰도 향상 및 경제적인 폐기물 처리공정으로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
-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『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』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위 치 : 구미시 금전동 241번지 일대
(4단지내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부지)

○ 시설 개요

- 부지면적 : 10,000평
- 압축포장기 공장 설치 : 350평
- 야적 부지 조성 : 7,000평
- 침출수 저류조 : 300톤
- 생활쓰레기 압축포장 보관량 : 167톤/일 (2006년 6월말 기준)

○ 위탁 내용

- 압축포장 방법 : 원형포장
- 위탁시기 : 2008. 1. 1부터 환경자원화시설 완공시까지 (약 3년)
- 위탁 범위
 -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
 - 선별·압축기계 등 주요기자재 설치
- 처리비 지급 : 생활쓰레기 처리량(압축·포장)에 따라 지급
- 위탁운영비 산정
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에 구미시 생활폐기물 원형압축포장
산출용역 후 입찰을 통하여 업체선정 및 처리비 단가계약

○ 위탁 업체

- 선정 방법 : 제한 경쟁입찰에 의한 수탁업체
- 선정 기준
 - 폐기물 원형압축포장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서
납품 실적 또는 운영실적을 가지고 있는 자
 -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
허가를 득한 자 (영업장 소재지 : 경상북도)

라. 참고사항

- 『폐기물관리법』 제13조 제2항
- 『폐기물관리법』 제26조
- 『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』 제4조
- 『지방자치법』 제95조 제3항
- 『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』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황 창 수

- 본 동의안은 환경자원화 시설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 처리시설인 압축·포장 시설 운영 및 관리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
- 시설 운영 관리에 전문인력 및 주요 기자재(선별기, 압축기계 등)가 설치 되어야 하므로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면에서 직영 관리하는 것보다 장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탁 운영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
- 다만, 업체 선정시 폐기물처리시설은 공공시설임을 고려하여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최적의 상태로 운전할 수 있는 우수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업체 선정 후에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